

공공안전연구소 규정(안)

신설 : 2018. 1. 10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공공안전연구소(이하 "연구소" 라 한다) 라 칭하며, 건양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공공안전에 필요한 연구 기반 구축 및 학술연구진흥을 위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공안전 관련 연구 활동 및 연구과제 제안
2. 공공안전 분야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 수행
3. 공공안전 분야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정책 제안
4. 공공안전 분야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
5. 공공안전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시행
6. 공공안전 관련 현장방문 연구 연계 활동

제 2 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연구소에는 연구부와 기획부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기)

- ① 연구소에 소장 1인, 간사 1인과, 각 부에는 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.
- ② 소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간사는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-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연구원

제6조(연구원)

-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(전임 및 위촉)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중이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

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③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7조(구성 및 회의)

-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5 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학교 지원,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(매칭펀드), 사업 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6 장 기 타

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